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6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3일

3. 제안 이유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 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우수 유전자를 지닌 도내 자생식물의 고유품종 보존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충청북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연구로 국제종자 경쟁력 확보와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 연구센터의 구성 및 위촉, 임기, 위촉해제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센터장 1인과 6명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3년의 임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센터장, 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거나 업무관련 비리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연구과제의 선정, 승인, 결과보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연구센터에서는 도지사,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과제를 선정 연구 (안 제7조)

-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장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내지 9조)

- 연구가 끝나면 연구결과를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함 (안 제10조)

-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활동비 및 여비지급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내지 12조)
- 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안 제13조)

5. 검토 의견

-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을 보존하고 육성, 보급시키고자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으로도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별도 조례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